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73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12일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호평, 문병훈, 봉양순,  
송재혁, 이경선, 이광호, 이동현,  
이세열, 이준형, 이현찬, 한기영  
의원(12명)

## 1. 제안이유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활성화 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실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제6조 추진사업 중 제4호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4호).
- 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 <p><u>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br/>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br/>· 무상 지원 사업</u></p> <p><u>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br/>격차 해소 사업</u></p> |
|--|---|